

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는 루터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학생상담지원센터라 칭한다. (2009.10.13.개정),(2012.7.19.개정),(2016.2.29.개정)

제2조(위치) 삭제 (2016.2.29.)

제3조(목적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는 루터대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, 양성평등지원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 (2009.10.13.개정),(2016.2.29.개정)

제4조(사업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실, 종합인력개발실, 양성평등상담실 등을 두고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 (2009.10.13.개정),(2012.7.19.개정),(2016.2.29.개정)

1. 본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(2018.2.19.개정)
2.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(2018.2.19.신설)
3. 양성평등 상담 및 교육 (2016.2.29.개정)
4.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상담 및 관련프로그램 운영 (2019.9.4.신설)
5. 종합인력 프로그램 실시 (2016.2.29.신설)
6. 학생지도 및 학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(2018.2.19.신설)
7. 학사경고자, 장기결석자 등 교내 관심 대상자들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(2018.2.19.신설)
8. 교내 구성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지원 (2018.2.19.신설)
9. (2017.1.26.삭제)
10. 기타 본 학생상담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(2009.10.13.개정),(2016.2.29.개정)

제 2 장 조직과 임무

제5조(조직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는 학생처 산하에 두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. (2009.10.13.개정),(2012.7.19.개정),(2016.2.29.개정),(2017.8.31.개정)

1. 센터장 (2009.10.13.개정),(2012.7.19.개정)
2. 상담실장 (2012.7.19.개정)

5-14-1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규정

3. 운영위원
4. 자문위원 (2016.2.29.개정)
5. 상담원 및 자원봉사 상담원 (2016.2.29.개정)
6. 조교

제6조(역할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 (2016.2.29.개정)

1. 센터장은 학생상담지원센터를 대표하고 학생상담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필요시 차상급자를 서리로 보할 수 있다. (2016.2.29.개정),(2016.12.30.개정)
 - ① 센터장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에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보고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19.9.4.개정)
 - ② 센터장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에 따라 해당 차년도 1월에 비교과(프로그램) 인증제를 통해 환류를 반영한 차년도 연간계획서를 1월 중으로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19.9.4.개정)
 - ③ 각 호 관련 환류 등 체계(PCDA)를 구축하여 운영하되, 성과관리센터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, 시행한다. (2019.9.4.개정)
2. 상담실장은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, 양성평등 상담 교육 등 전반적인 실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 상담실장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직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 (2016.2.29.개정),(2016.12.30.개정)
3. 운영위원회는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기구 역할을 하며,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각 전공 및 교양 전공 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.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운영위원회는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·평가, 예·결산 심의 및 규정 개정 등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 (2016.2.29.개정),(2017.11.20.개정),(2018.2.19.개정),(2020.2.25.개정)
4. 자문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소 전문가 1인 이상을 두며 센터장이 위촉한다. (2016.2.29.개정)
5. 상담원 및 자원봉사 상담원은 상담 활동과 프로그램을 수행한다. (2016.2.29.개정)
6. 조교는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실무 활동을 보조한다. (2016.2.29.개정)

제7조(운영위원) 삭제 (2016.2.29.)

제8조(심의사항) 삭제 (2016.2.29.)

제 3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본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총당한다. (2009.10.13.개정),(2012.7.19.개정)

1. 교비 지원금
2. 외부 수익사업 및 기타 외부 보조금

제10조(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비) 학생상담지원센터 명의로 수령된 모든 예산은 학교의 예·결산 원칙에 의하여 사용한다. 회계연도는 루터대학교에 따른다. (2012.7.19.개정)

제 4 장 권리 및 정보관리

제11조(학생상담지원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)

1. 학생상담지원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는 거절 할 권리,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 (2017.2.17.신설)
2. 학생상담지원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 해당 정보가 센터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상담지원센터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 (2017.2.17.신설)

제12조(정보의 관리)

1.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(면접기록, 심리검사기록, 상담기록 등)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담당자 이외에는 기록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한다.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 (2017.2.17.신설)
2. 학생이 이용한 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를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해당 학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나 학생이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한다. (2017.2.17.신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루터상담실을 루터상담소로 변경한다.

5-14-1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